

##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4

제출연월일 : 2003년 11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최근 금융권의 저금리기조 등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도가 설치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용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공채매입 대상을 축소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지역투자 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기금용자 대상범위 확대
  - 상·하수도, 토지 및 주택개발, 공영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에 용자하던 것을
  -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향토지적재산육성 사업 등에도 용자 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 기금용자 상환조건 개선
  - 용자조건이 상·하수도사업 '2년거치 10년',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3년거치 2년', 공영개발사업 등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하던 것을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통일 조정함. (제10조)

○ 상환기간 만료공채이자 미지급규정 삭제

- 공채 상환기간 만료후의 이자 미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함 (제6조)

○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감면대상 조정

- 현행 공채매입대상을 8개분야에서 4개분야로 축소하고 1,000cc미만 경차 구입·이전시 공채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며,
- 공채매입 감면대상을 일부 추가하고 공채매입대상 축소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제5조)

의안전문 : 따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지방채의 소화)”를“(지방채의 매출 및 대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5항중“소화”를 각각“매출”로 하며, 동조제1항중“소화는”을“매출은”으로,“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공채의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소화가”를“매출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를“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6조제2항중“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를“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중“도로사업”을“도로사업,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다음과 같이”를“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여된 용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 매입 대상 및 기준

대상분야별	매입 대상	매입 기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② 1,500cc 이상 ③ 2,000cc 이상	등록세 과표의 6/100 " 8/100 "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등록세 과표의 3/100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	등록세 과표의 3/100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등록세 과표의 2/100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등록세 과표의 1/100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	등록세 과표의 1/100
2. 자동차 이전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② 1,500cc 이상 ③ 2,000cc 이상	등록세 과표의 3/100 " 4/100 " 6/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등록세 과표의 1.5/100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	등록세 과표의 1.5/100

대상분야별	매입대상	매입기준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등록세 과표의 1/100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등록세 과표의 0.5/100
	바. 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	등록세 과표의 0.5/100
3. 기타 허가 및 신고	가.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나. 토지형질변경허가 ① 농지(전·답) ② 임야, 잡종지 등 기타지목 다. 토석·모래·자갈 채취허가(하천법) 라. 골프장 등록	점용료 부과액의 5/100  m'당 1,500원 시 : m'당 3,000원 읍·면 : m'당 1,500원  점용료의 5/100  m'당 60원
4. 각종 계약 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 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 기타계약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 청구액의 2.5/100 * 1.5/100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별표 2]

## 매입 감면대상

구 분	매입 감 면 대 상
1. 기관·단체	<p>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p> <p>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p> <p>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p> <p>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나환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p> <p>바. 민법·상법 외의 개별법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p> <p>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p> <p>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p>
2. 대상사업·행위	<p>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p> <p>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차량등록 (1인 1대에 한하며,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다. 주민 직영사업 및 노임 직영사업</p>

구 분	매 입 감 면 대 상
	<p>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건축신고 포함)</p> <p>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급량비, 입부추진비성격의 물품구매</p> <p>바.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전용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외 도로, 하천, 구기부지점용, 토지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 채취 허가</p> <p>사.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p> <p>아. 천제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인한 재산의 대체취득시의 등록, 인·허가.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채 매입(지방세법 제108조 적용 대상에 한함)</p> <p>자.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이전 등록</p>





## 신·구조문대비표

기안	개정
<p>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생략)            ②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u>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            ③ (생략)</p>	<p>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u>공고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용자대상)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및 <u>도로사업</u> 등 지역개발기금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용자할 수 있다.</p>	<p>제8조(용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u>도로사업,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u> . . . . .            . . . . .</p>
<p>제10조(용자조건) ① (생략)            ②용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권이므로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에는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1. <u>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u>  <u>균분상환</u>            2. <u>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거치</u>  <u>2년균분상환</u>            3. <u>기타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u>            ③ - ④ (생략)</p>	<p>제10조(용자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t; 삭제 &gt;</u>            . . . . .  <u>&lt; 삭제 &gt;</u>            . . . . .  <u>&lt; 삭제 &gt;</u>            ③ - ④ (현행과 같음)</p>

[별표 1]

## 매입대상 및 기준 신규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1. 자동차 신규등록		1. 자동차 신규등록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대상	매입기준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800cc미만	등록세 과표의1.5/100	<삭제>	등록세 과표의6/100	
② 800cc이상	" 3/100	<삭제>		
③ 1,000cc이상	" 6/100	① 1,000cc이상		
④ 1,500cc이상	" 8/100	② 1,500cc이상		" 8/100
⑤ 2,000cc이상	" 12/100	③ 2,000cc이상		" 12/100
⑥ 2,500cc이상	" 12/100	<삭제>		
⑦ 지이프형	" 6/100	<삭제>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신설>		① 11인승 이상	등록세 과표의3/100	
① 경형(800cc이하)	등록세 과표의1.5/100	<삭제>		
② 소형(7~15인승)	" 3/100	<삭제>		
③ 중형(16~25인승)	" 3/100	<삭제>		
④ 대형(26인승이상)	" 3/100	<삭제>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신설>		① 1톤 이상	등록세 과표의3/100	
① 0.6톤 미만	등록세 과표의1.5/100	<삭제>		
② 2.5톤 미만	" 3/100	<삭제>		
③ 2.5~4.5톤 미만	" 3/100	<삭제>		
④ 4.5톤 이상	" 3/100	<삭제>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800cc미만	등록세 과표의1/100	<삭제>	등록세 과표의2/100	
② 800cc이상	" 2/100	<삭제>		
③ 1,000cc이상	" 2/100	① 1,000cc이상		
④ 1,500cc이상	" 2/100	<삭제>		
⑤ 2,000cc이상	" 2/100	<삭제>		
⑥ 2,500cc이상	" 2/100	<삭제>		
⑦ 지이프형	" 2/100	<삭제>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설>		① 11인승 이상	등록세 과표의1/100	
① 경형(800cc이하)	등록세 과표의0.5/100	<삭제>		
② 소형(7~15인승)	" 1/100	<삭제>		
③ 중형(16~25인승)	" 1/100	<삭제>		
④ 대형(26인승 이상)	" 1/100	<삭제>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신설>		① 1톤 이상	등록세 과표의1/100	
① 0.6톤 미만	등록세 과표의0.5/100	<삭제>		
② 2.5톤 미만	" 1/100	<삭제>		
③ 2.5~4.5톤 미만	" 1/100	<삭제>		
④ 4.5톤 이상	" 1/100	<삭제>		

제 2 차		제 2 차		
2. 자동차 이전등록 (사)·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2. 자동차 이전등록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대상	매입기준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800cc미만	등록세과표의0.75/100	<삭 제>	등록세 과표의3/100	
② 800cc이상	" 1.5/100	<삭 제>		
③ 1,000cc이상	" 3/100	① 1,000cc이상		
④ 1,500cc이상	" 4/100	② 1,500cc이상		" 4/100
⑤ 2,000cc이상	" 6/100	③ 2,000cc이상		" 6/100
⑥ 2,500cc이상	" 6/100	<삭 제>		
⑦ 지이프형	" 3/100	<삭 제>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신 설>		① 11인승 이상	등록세 과표의1.5/100	
① 경형(800cc이하)	등록세과표의0.75/100	<삭 제>		
② 소형(7~15인승)	" 1.5/100	<삭 제>		
③ 중형(16~25인승)	" 1.5/100	<삭 제>		
④ 대형(26인승 이상)	" 1.5/100	<삭 제>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신 설>		① 1톤 이상	등록세 과표의1.5/100	
① 0.6톤 미만	등록세과표의0.75/100	<삭 제>		
② 2.5톤 미만	" 1.5/100	<삭 제>		
③ 2.5~4.5톤 미만	" 1.5/100	<삭 제>		
④ 4.5톤 이상	" 1.5/100	<삭 제>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800cc미만	등록세과표의0.5/100	<삭 제>	등록세 과표의1/100	
② 800cc이상	" 1/100	<삭 제>		
③ 1,000cc이상	" 1/100	① 1,000cc이상		
④ 1,500cc이상	" 1/100	<삭 제>		
⑤ 2,000cc이상	" 1/100	<삭 제>		
⑥ 2,500cc이상	" 1/100	<삭 제>		
⑦ 지이프형	" 1/100	<삭 제>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 설>		① 11인승 이상	등록세 과표의0.5/100	
① 경형(800cc이하)	등록세과표의0.25/100	<삭 제>		
② 소형(7~15인승)	" 0.5/100	<삭 제>		
③ 중형(16~25인승)	" 0.5/100	<삭 제>		
④ 대형(26인승 이상)	" 0.5/100	<삭 제>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신 설>		① 1톤 이상	등록세 과표의0.5/100	
① 0.6톤 미만	등록세과표의0.25/100	<삭 제>		
② 2.5톤 미만	" 0.5/100	<삭 제>		
③ 2.5~4.5톤 미만	" 0.5/100	<삭 제>		
④ 4.5톤 이상	" 0.5/100	<삭 제>		

현행		개정안			
대입대상	대입기준	대입대상	대입기준		
<b>3. 중기등록(건설기계)</b>					
가. 신규등록	등록세과표의5/1,000	(삭제)			
나. 이전등록	" 25/1,000				
<b>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b>					
가. 자동차운송 안전사업 및 대여사업					
①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500천원	(삭제)			
② 장소이전	165천원				
나. 자동차 정비업					
① 종합정비업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450천원				
② 종합정비업 장소이전	150천원				
③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부분정비업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300천원				
④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부분정비업 장소이전	100천원				
다. 자동차매매업 및 폐차업					
①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00천원	(삭제)			
② 장소이전	65천원				
<b>5. 수익적인·허가 등 (명의변경 포함)</b>					
위·허가청구분	광역시및도	인구30만이상이 및도청소재지시	기타 시·군		
가. 면허세 1종	90천원	70천원	55천원		
나. 면허세 2종	75천원	60천원	45천원		
다. 면허세 3종	65천원	50천원	40천원		
라. 면허세 4종	50천원	40천원	30천원		
마. 면허세 5종	40천원	30천원	20천원		
<b>6. 기타허가 및 신고</b>					
가. 도로·하천·구거부지점용허가	점용료부과액의 5/1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행과 같음)			
① 농지(전·답)	m <sup>2</sup> 당 1,500원				
② 임야·잡종지 등 기타지목	시 : m <sup>2</sup> 당 3,000원 읍·면 : m <sup>2</sup> 당 1,500원				
다. 토석·산림 채취허가(하천법)	점용료의 5/100	다. 토석·모래·자갈 채취허가(하천법)	점용료의 5/100		
라. 골짜방 등록	m <sup>2</sup> 당 60원	(현행과 같음)			

현행		기정안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대상	매입기준
7. 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 권역출자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7. 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 권역출자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용역계약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포함)	대금청구액의 2.5/100	가. 공사도급·용역계약	대금청구액의 2.5/100
나.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	* 1.5/100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 기타계약	* 1.5/100
다만 가, 나 공히 계약금액 500천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다만 가, 나 공히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8.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삭제>	
가. 국공유재산 매각 (공영개발에 의한 토지, 주택 제외)	매각대금의 1.5/100		
나. 국공유재산 임대 (공영개발에 의한 임대용 토지, 주택 제외)	임대료의 1.5/100		

※ 매입의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결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 매입 감면대상 신구조문대비

### 2. 대상사업·행위

현행	개정안
<p>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소유의 차량등록 (장애인 1인 1대에 한함) 다만,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하는 보호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고 해당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포함)명의의 차량등록</p>	<p>나. 「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광주민중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중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차량등록 (1인 1대에 한하며,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다. 각종 인·허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허가</li> <li>○ 기 허가를 얻은 자로서 종목별로 초과되는 허가</li> <li>○ 구조변경 및 상황변경 허가</li> <li>○ 신고제에 의한 신고 후 장소변경 신고</li> <li>○ 면허세 4종중 부과임</li> </ul>	<p>&lt;삭제&gt;</p>
<p>라.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임대계약</p>	<p>&lt;삭제&gt;</p>
<p>마. 피해복·수목갱신, 벌채허가</p>	<p>&lt;삭제&gt;</p>
<p>바. 주민 직영사업 및 노임 직영사업</p>	<p>다. (현행과 같음)</p>

현	개정안
<p>사.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건축신고 포함) 다만,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한.</p>	<p>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건축신고 포함)</p>
<p>아. 판서담경비, 급량비, 특수합동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 제1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p>	<p>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급량비, 업무추진비 성격의 물품구매</p>
<p>자.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p>	<p>&lt;삭제&gt;</p>
<p>차.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중 도로, 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토석사리취득허가</p>	<p>바.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도로, 하천, 구거부지점용, 토지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 채취허가</p>
<p>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단, 임대는 동지구 지정기간에 한함)</p>	<p>&lt;삭제&gt;</p>
<p>타.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p>	<p>사. (현행과 같음)</p>
<p>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산의 대체취득시의 등록, 인·허가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채소환(지방세법 제108조 적용대상에 한함)</p>	<p>안. . . . . . . . . . . . . . . 공채매입 . . . . . . . . . .</p>
<p>하.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중기이전등록</p>	<p>자.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이전등록</p>
<p>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법인 수익적 인허가</p>	<p>&lt;삭제&gt;</p>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 ④ ( 생 략 )

###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